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09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김태년 · 임오경 · 문정복
안태준 · 이재강 · 이학영
최민희 · 김준혁 · 김기표
허종식 · 이광희 · 양부남
서영석 · 김영환 · 윤종균
정태호 · 손명수 · 김성희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편중의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 보통세 세목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와의 징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일치시키며, 조세 불복 절차가 국세의 예에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적용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추가하는 등 제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8조, 제34조제1항 및 제93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7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방법인세

제8조제1항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지방법인세

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지방법인세

제8조제5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지방법인세

제34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지방법인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93조의2제1항제5호 중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를 “지방소비세, 레저세 및 지방법인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법인세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제34조 및 제93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 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u>10. 지방법인세</u>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 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 사. (생 략) <u><신 설></u> 2. 목적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 라. (생 략) <u><신 설></u> 2. 목적세 ③ · ④ (생 략)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 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u>아. 지방법인세</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지방법인세</u>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9. (생략) <u><신설></u> 10. · 11. (생략) ⑥ (생략)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9. (생략) <u><신설></u> 10. ~ 12. (생략) ② · ③ (생략)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지방법인세</u> 10. · 11.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지방법인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u> 10.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	---

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담배소비세, <u>지방소비세</u> 및 <u>레저세</u>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 ④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담배소비세, <u>지방소비세</u>, <u>레 저세</u> 및 <u>지방법인세</u>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 일 것 ② ~ ④ (현행과 같음)
--	---